

의안번호	제 87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296회)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문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0년 11월 30일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30일

발 의 자 : 박문희 · 황규철 · 김봉희 · 정현 ·

김희수 · 김종필 · 윤성옥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4조)

나. 폐지된 법령 삭제(안 제9조제1항제3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사업의 규모,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

국·도비, 시·군비, 자부담 등 2010년에 3억7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

※ 2010년의 경우 376,000천원 확보(도비106,000 시군비120,000 자담150,000)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, 제3호의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

제9조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14조 중 “인정된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
1. “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(이하 “농특산물”이라 한다.)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으로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.)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상품을 총칭한다.	1. ----- -----이 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농림수산물”이라 함은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.	2. ----- 이란 ----- ----- -----.
3. “농산물가공품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가공식품 전 통식품을 말한다.	3. -----이란 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4. “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(이하 “도 품질인증마크”라 한다.)”라 함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.	4. ----- ----- -----란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[별표 1]의 상품류구분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10조제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[별표 1]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제9조(사용권 취소) ①(생략) 1. ~ 2. (생략) 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환경농업육성법」, 「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등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	제9조(사용권 취소) ①현행과 같음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

현행	개정안
4. (생략) ②제1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 할 수 없으며, 이미 제작·유인된 상표는 폐기·말소하여야 한다. 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⑤ (생략)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⑦(생략) 제14조(사무위임)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	4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 ⑦(현행과 같음) 제14조(사무위임) -----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 -----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상표법

제10조(1상표 1출원)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.

□ 상표법 시행규칙

제6조(상품류구분등)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